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5
------	----

2022. 8. 5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7월 13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7.25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주용태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2022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」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경예산 : 621,4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40,372,057천원 (기 출연금 39,750,657천원)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: 470,000천원
-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 : 21,400천원
-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: 100,000천원

-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: 30,000천원

3) 추정필요성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

- '94년 구매 설치한 터보냉동기(내용연수 10년)로,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공연장의 안정적인 냉방 공급을 위해 교체가 시급

- * '19년 냉방가동 중 누유사고 발생으로 긴급점검 시행한 결과, 노후상태가 심각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 불가 판정 받음

- 방재실 휴게공간 조성 공사

- 현재 운영 중인 방재실 휴게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항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여 개선 필요

- * '22. 4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적사항으로, 8월까지 미개선 시 과태료 발생 우려

- “예술로 동행” 확대 운영

- 서울시 주요 시정사업인 ‘약자와의 동행’과 연계, 서울시 예술단이 병원,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5회 확대 하여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

- * 예술로 동행: (당초) 17회 → (확대) 22회

- “천원의 행복” 확대 운영

-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제공이라는 사업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대중적인 공연으로, ‘엄마·아빠행복 프로젝트’와 연계하여 현재 20% 수준인 문화소외 계층 초청 비율을 30%까지 확대 운영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 모 : 대지 55,758㎡, 건물 63,396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 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

-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기정출연금은 421억 7천 1백만원이며, 본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6억 2천 1백만원 (1.5%)임.

< 세종문화회관 추가경정예산(안) 편성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
계	42,792,057	42,170,657	621,400	1.5%
세종문화회관 출연금	40,372,057	39,750,657	621,400	1.6%
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	2,420,000	2,420,000	0	0%

* 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’는 세종라운지(가칭) 조성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출연금임.

-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.
-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체수입이 급감하여 2021년도에는 위탁사업장인 삼청각을 제외한 당기순손익에서 15억 3천 5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.

< 세종문화회관 최근 5개년 간 수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8년도	2019년도	2020년도	2021년도	2022년도
총수입	51,381(100%)	54,881(100%)	59,023(100%)	61,379(100%)	62,027(100%)
출연금	26,263 (51%)	30,780 (56%)	32,913 (56%)	35,770 (58%)	39,751 (64%)
자체수입	25,118 (49%)	24,101 (44%)	26,110 (44%)	24,210 (42%)	20,894 (36%)

-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 620억 2천 7백만원 중 사업비는 193억 9천 8백만원으로 2021년도 188억원 대비 5억 9천 8백만원 (3.2%)이 증가하였고, 이 중 공연사업비는 105억 5천 8백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7억 1백만원(19.2%)이 증가하였음.

<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 지출예산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도	2021년도	증감액	증감률
공연사업	10,557,900	8,856,500	1,701,400	19.2%
예술단공연	6,455,900	5,217,500	1,238,400	23.7%
기획공연	3,120,000	2,643,000	477,000	18.0%
나눔연계공연(천원의 행복)	700,000	845,000	△145,000	△17.2%
꿈의숲 기획공연	282,000	151,000	131,000	86.8%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이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
 - ▶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4억 7천만원 ▶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 2천 1백만원 ▶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1억원 ▶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3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시설개선과 시민공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.
-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장의 안정적 냉방 공급, 휴게공간 조성,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증진 등을 근거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본예산 또는 제1차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로 긴급성 등 추경 편성 요건(대규모 재해,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대내·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)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.

다. 세부사업별 검토

1)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(신규)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는 여름철 안정적인 냉방 공급을 위해 고장난 1기의 냉동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7천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.

< 세종문화회관 터보냉동기 교체공사 세부내역안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내역	예산액	비고
계		470,000	
터보냉동기	500RT 1대	345,000	설계 결과 항목 간 조정 가능
기계공사비	냉수, 냉각수 배관	55,000	
전기공사비	전기배선 등	50,000	
설계비		20,000	

- 세종문화회관이 보유한 냉동기는 회관내부용 터보 냉동기 2기, 지하 임대공간용 스크류 냉동기 1기 등 총 3기이며, 교체하고자 하는 터보 냉동기 1기는 1994년 6월 설치된 것으로 2019년 9월 오일 누유가 발생하여 전문업체에 점검을 받은 결과 교체대상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음.
- 또한 고장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·수입이 전면 금지된 물질로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생산된 냉동기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됨.

< 세종문화회관 냉동기 보유현황 >

호기	형식	용량	대수	냉매	제작사(설치일자)	사용처	내구연한	장비상태
1	터보 냉동기	500RT	1	R-11	경원세기(1994.06)	회관용	10년	고장
2	터보 냉동기	500RT	1	R-134a	LS엠트론(2010.11)	회관용	10년	양호
3	스크류냉동기	100RT	1	R-134a	LS엠트론(2010.11)	임대용	10년	양호

- 세종문화회관은 해당 기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.
- 그러나 본예산과 제1차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제2차 추경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다만, 올해 기상청의 폭염 예보와 더불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냉방공급 중단 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-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도 법정 내구연한인 10년이 도달한지 무려 15년이 경과하였고, 사용 중인 냉매가 법령에 따라 생산·수입이 금지된 시점 또한 9년이 경과하는 등 고장 발생 이전까지 기기 교체에 대한 계획이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은 안전에 대한 준비성 및 대처 능력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극장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하고, 서울시 대표 극장으로서의 위상과 세계수준의 콘텐츠 제작극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2)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(신규)

- 해당 사업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¹⁾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²⁾에 의거,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천 1백 4십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고, 관련 법령 시행일(8.18.)에 맞춰 방재실 교대근무자를 위해 냉난방 시설 설치, 수면공간 확보 등 휴게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< 세종문화회관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 세부내역안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내역	예산액	비고
계		21,400	
건축공사	벽, 천장 등 인테리어	15,000	
전기공사	콘센트, 바닥 난방	4,400	
기계분야	냉/난방 시설	2,000	

-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관 내 휴게시설을 조사한 결과, 기준에 부적합한 휴게공간을 발견하였고, 지난 4월 재단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³⁾의 의결로 대상 휴게공간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음.

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제1항 “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”
 2)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1조제1항 “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”

- 이 사업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법령의 시행일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바,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.

3) ‘예술로 동행’ 확대 운영

- 나눔연계공연 중 ‘예술로 동행’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.
- 이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문화재단의 ‘지역문화진흥사업’ 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있음.
-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3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.
- 해당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개년 간(2020~2021년도) 집행률이 50% 미만이었고, 비대면 관객을 포함한 관객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면 관객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.

< 코로나19 발생 이후 ‘예술로 동행’ 실적 현황 >

구분	사업예산	관람인원(비대면포함)	객석점유율
2020년도	400,000천원	8,953명	87.2%
2021년도	325,000천원	6,402명	88.5%
2022년도	300,000천원	5,362명	80.0%

-
- 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제1항 “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”

4) ‘천원의 행복’ 확대 운영

- ‘천원의 행복’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연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천원의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, 3천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.
- 올해는 특히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월 1회 온·오프라인 정기 공연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.
- 이 사업은 ‘예술로 동행’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 공연횟수가 1회 추가됨.

< 2022년도 ‘천원의 행복’ 공연 계획 >

(단위: 천원)

연번	월별 공연	사업비
계		400,000
1	3월 - 고잉 온 콘서트 (오케스트라)	52,600
2	4월 - 수어연극(4.20. 장애인의 날 기념)	63,700
3	5월 - 어린이 합창(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)	20,700
4	6월 - 오케스트라(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)	35,700
5	6월 - 퓨전국악 갈라 콘서트(서울시 청소년국악단)	36,700
6	8월 - S-CLASSIC WEEK	4,900
7	8월 - 국악 퓨전 콘서트	33,700
8	9월 - 동요, 클래식이 되다	24,900
9	9월 - 가을의 앙상블	19,500
10	10월 - 하프 & 마림바 앙상블	25,900
11	11월 - 가족무용극 ‘나의 심청’	55,700
12	12월 - 수궁가	26,000

- 연간 공연계획을 살펴보면 수어연극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, 기획단계부터 온라인 송출을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공연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나타남.
- 따라서 재단은 동 사업이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·발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확장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라. 종합의견
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공연·전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파악되었음.
- 특히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‘냉동기 교체’와 ‘방재 휴게실 개선’과 같이 편성이 시급한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단뿐 아니라 관리·감독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- 사회공헌사업의 경우, ‘누구나’, ‘쉽게’, ‘최고의’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확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.
- 세종문화회관이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는 편성시기에

있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연·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불가피성이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교체대상 냉동기 이외 2기의 냉동기의 교체시기도 미리 검토하여 냉방 중단 사태를 예방해 주기 바람.
- 답변 : 검토하겠음.
- 질의 : 광화문 아띠의 무단점유 영입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?
- 답변 :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임.

V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25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2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경예산 : 621,4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40,372,057천원 (기 출연금 39,750,657천원)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: 470,000천원
-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 : 21,400천원
-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: 100,000천원
-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: 30,000천원

2) 추경필요성

-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

· '94년 구매 설치한 터보냉동기(내용연수 10년)로,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공연장의 안정적인 냉방 공급을 위해 교체가 시급

* '19년 냉방가동 중 누유사고 발생으로 긴급점검 시행한 결과, 노후상태가 심각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 불가 판정 받음

- 방재실 휴게공간 조성 공사

- 현재 운영 중인 방재실 휴게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항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하여 개선 필요

* '22. 4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적사항으로, 8월까지 미개선 시 과태료 발생 우려

- “예술로 동행” 확대 운영

- 서울시 주요 시정사업인 ‘약자와의 동행’과 연계, 서울시 예술단이 병원,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5회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

* 예술로 동행: (당초) 17회 → (확대) 22회

- “천원의 행복” 확대 운영

-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제공이라는 사업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대중적인 공연으로, ‘엄마·아빠행복 프로젝트’와 연계하여 현재 20% 수준인 문화소외계층 초청 비율을 30%까지 확대 운영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4,094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·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